

## 전기용품 안전기준(62종) 폐지 고시 주요내용

- 국가기술표준원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 제3항,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.

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-0579호

## 전기용품 안전기준(62종) 폐지 고시

### 1. 폐지이유

- 현행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활용되지 않는 안전기준 폐지

### 2. 주요 내용

- 대상 안전기준(붙임 참조)

※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 → 고시·공고)

## 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】 1. 고시문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-0579호) 끝.